

7.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(승진규정 제40조제3항, 제4항)

가. 교감으로서 교장 자격연수 및 승진 평정대상자,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평정대상자인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의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 또는 등등급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begin{aligned} \text{※ 근무성적 평정점} &= (\text{최근 } 1\text{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} \times 34/100) \\ &+ (\text{최근 } 1\text{년 전 } 2\text{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} \times 33/100) \\ &+ (\text{최근 } 2\text{년 전 } 3\text{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} \times 33/100) \end{aligned}$$

나. 교사로서 교감 자격연수 및 승진 평정대상자는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begin{aligned} \text{※ 합산점} &= (\text{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} \times 34/100) \\ &+ (\text{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} \times 33/100) \\ &+ (\text{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} \times 33/100) \end{aligned}$$

※ 합산점 :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

※ 근무성적 평정점과 합산점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

8. 평정의 유의점

가.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가점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점 및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(총점 및 조정점)가 모두 평정점 분포 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, 각 다면평가자의 다면평가점(정성평가점)도 평정점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.

나. 교사의 다면평가는 승진규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9 및 「교사 다면평가 시행계획」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다. 평정단위 학년도 기간 중에 징계를 받은 자나 감사(조사)결과 행정 처분된 자는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한다.

구분	징계 및 불문(경고)			행정처분	
	중징계 (강등, 정직)	경징계 (감봉, 견책)	불문(경고)	경고	주의
평정기준	'수', '우' 불가	'수' 불가	1회당 2.5점 감점	1회당 0.3점 감점	2회에 0.1점 감점 (추가 1회당 0.1점 추가 감점)

※ 감점 영역 : 조정점에서 감점

※ 다만, 종합감사 등으로 동일자에 받은 동일한 행정처분은 2회 이상 받은 경우라도 1회로 간주함
(예1) 2025.5.16. 종합감사 시 경고 1회, 주의 2회를 받은 경우 → 경고 1회, 주의 1회

(예2) 2025.5.16. 종합감사 시 주의 3회, 2025.10.17. 특별감사 시 주의 1회를 받은 경우 → 주의 2회

※ 소송 또는 소청 등을 반영하여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근무성적평정 반영은 원징계 학년도 또는 재징계 학년도 중 1회만 반영함

- 원징계에서 근무성적평정을 반영한 경우, 학년도를 달리한 재징계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음

※ 중징계(강등, 정직) 처분자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'수', '우' 평정이 불가함

※ 경징계(감봉, 견책) 처분자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'수' 평정이 불가함

※ 불문(경고)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「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」 항목에 대하여 평정자, 확인자 모두 만점 평정은 불가함

※ 교사 다면평가에서는 위의 징계 또는 행정 처분된 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